

의안번호	2212841
의 퇴 인	강득구 의원
회 답 일	2025.11.20.
추 계 번호	25B5026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900만원, 2031년 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7,800만원(연평균 1,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2	—	—	—	—	42	8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안 제8조)	7	7	7	7	7	36	7
합 계	49	7	7	7	7	78	16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고용유지,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현황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치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둔(제1항)	의무규정
		보장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3항) 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 연구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3. 고등학교졸업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회 운영 4. 고등학교졸업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졸업취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고졸 취업안전보장센 터 및 지부의 설 치·운영)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이하 “보장센터”라 한다)를 둔다(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고용센터 및 시·도교육청에 보장센터를 설치해야 함(제2항)	의무규정
		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3항) 1. 제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보조 2. 고등학교졸업취업자가 근무하는 기업 등의 부당한 노동 환경감시 및 구제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진로 발굴 업무 4. 고등학교졸업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지원 5.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행정적·재정 적 지원 업무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보장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지부를 둔다. 각 지부에 파견된 직원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함(제4항) 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관련 상담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안내 3.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취업 추적 관 리 4. 기업에 대한 고등학교졸업자 홍보 5. 연수 및 교육 6. 기업 연계 7. 고등학교졸업취업자 부당 노동 환경 감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보장센터 및 지부의 직원 채용 및 배치 기준 등 보장센터 및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7	안 제11조(경비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장원, 보장센 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2조(고등 학교졸업자 정보 관리플랫폼의 설 치·운영 등)	보장원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고등학 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이하 “정보관리플랫폼”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4조(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고등학교졸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 구직 관련 교육비: 구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받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2. 구직 활동 촉진비: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	의무규정
10	안 제15조(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고등학교졸업자를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을 시행하는 경우 4. 고등학교졸업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규정
11	안 제16조(고용안정공제회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회 사업 2.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12	안 제17조(고등학교졸업자 권익보호)	누구든지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한 사실 및 그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장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	의무규정
		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제3항)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제4항)	의무규정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보장센터는 고등학교졸업취업자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제6항)	의무규정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13	안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의무규정
14	안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 공식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3	안 제6조(시행계획)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8조(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	• 공식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9조(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치 및 운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하 “보장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이하 “보장센터”)를 두는 내용으로, 보장원 및 보장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보장원 및 보장센터 설치 규모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6	안 제10조(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및 지부의 설치·운영)		
7	안 제11조(경비 지원 및 보조)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장원, 보장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시점에서 보장원·보장센터의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2조(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설치·운영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보장원으로 하여금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이하 “정보관리플랫폼”)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보관리플랫폼 설치·운영에 따른 보장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정보관리플랫폼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도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4조(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고등학교졸업자에게 구직 관련 교육비 및 구직 활동 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10	안 제15조(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등학교졸업자를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 채용하거나 특별채용·현장실습·인턴제도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11	안 제16조(고용안정공제회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회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7조(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	• 미대상 － 제정안은 누구든지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한 사실 및 그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장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장센터는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보장센터가 설치될 경우 동 조항은 보장센터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3	안 제19조(벌칙)	—	• 미대상 － 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4	안 제20조(양벌 규정)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4,2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2]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의 수립	42	—	—	—	—	42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나.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위원 수)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규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움
 - 다만,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유사 위원회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반기별로 1회씩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8	18	18	18	18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7.2	7.2	7.2	7.2	7.2	36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7,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2	—	—	—	—	42	8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안 제8조)	7	7	7	7	7	36	7
합 계	49	7	7	7	7	78	16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